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사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최삼림 주민자치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확대 및 자치센터 운영재원의 동 자체 확보능력을 도모하고
-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참여 유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 개선 등으로 자율성 제고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[주민자치센터 운영]

- 주민자치센터 명칭 일원화
-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
-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
-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,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
- 사용료 등의 징수·관리체계 개선
-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

### [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]

- 위원회에 일부 의결·집행기능 부여,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회확대등
- 고문제도, 위원위촉 절차, 위원장 자격요건, 위원 주요 인적사항공개 등
-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
-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
-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
-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 시 위원회 심의
-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(부칙)

#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- 사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(전반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「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」 및 「2단계 읍,면,동 기능전환 추진지침」 중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지침의 일환으로 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을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
-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또는 조항신설을 한바(전부개정)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센터 명칭 단일화(제2조), 자치센터 기능의 다양화(제5조),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지급근거마련(제7조3항), 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비지원 근거마련(제7조4항), 구청장이 자문단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제7조6항) 하였고
- 사용료등의 징수,관리체계를 개선(제10조2,3항)하고,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혜택(제10조5항)을 줄수있도록 하고, 수입과 지출의 공개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(제10조6항)는 물론, 주민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면에서도, 위원수·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(제17)하여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했으며, 특정계층의 집중화방지, 여성위원이

일정비율(1/3)이상 되도록 하는등, 새시대에 부응되도록 개정되어 있어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 기대됩니다

- 또한, 제10조③⑤항과 관련된 별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계산 또는 이해가 되도록 세분화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
  
- 다만,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임시회시 거론되었던 것으로 당시 본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거론되었던 부분과 자구수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첨부: 수정안대비표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2. "단체"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<u>직능·자생단체</u>, <u>취미·동호회</u>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민간단체"란----- -----<u>각종 직능·취미</u> <u>동호회</u> 등 주민이 조직한 <u>자생단체</u>를 말한다</p>	<p>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민간단체"(이하 "단체"라 한다)란----- ----- ----- -----</p>